

#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함명섭 의원 대표발의

#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6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9월 6일

발 의 자 : 함명섭 의원

찬 성 자 : 박찬원, 박종욱  
장문혁, 이범연  
임영순 의원

## 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7년 9월 11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
나.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# 심 사 제 획

## 1. 활동목적

-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
-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## 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
-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
-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- 평창군 험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-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
-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3. 활동기간

○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.

### 4. 구성

○ 박찬원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 이범연 의원  
임영순 의원

### 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 용	비고
2017. 9.11 (월)	제1차 조례특위 (13:3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.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.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.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.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.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.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.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.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2.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. 평창군 햄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.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.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.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7.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18.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### 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